# 우리 나라 고대계급신분의 구성과 분화에 대한 연구

박사 김 운

#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에서는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가지고있는가 가지고있지 못한가 하는데 따라 사회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여지며 피착취계급, 피지배계급이 인민대중의 기본구성부분을 이룬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8권 84페지)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의 소유관계에 관한 문제는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가르는 기본징표이다.

우리 나라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주계급을 한편으로 하는 지배계급, 착취계급과 평민, 노예를 다른 편으로 하는 피지배계급, 피착취계급으로 갈라져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 관계의 기본으로 되여왔다.

노예사회에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노예주계급은 저들의 정치경제적특권을 정당화하고 더 많은 피압박인민대중을 예속화하기 위하여 신분제도를 만들어냈다.

신분제도는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서 사람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그것을 대대로 이어받게 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나라 노예사회에서의 계급구성, 신분구성에 대하여 적지 않게 론의하였다.

《조선단대사》와 《부여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여러 도서들에서는 우리 나라 노예소유자사회에서 지배계급으로 귀족신분이 있었고 피지배계급신분으로 평민과 노예가 있었다는것과 그 계급신분관계를 서술하였다.

특히 《조선단대사》에서는 자영소농민층이 점차 분화되여 호민과 하호가 되였다는데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다.

선행한 연구에서 우리 나라 고대시기 계급신분의 기본구성과 일부 분화에 대하여서 는 론의하였지만 계급신분의 전반적인 견지에서 그것이 노예사회발전과 함께 어떻게 분 화되고 공고화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고대계급신분의 구성이 어떻게 분화되여 공고화되였는가 하는 문제는 조선신분제도 사의 첫 시기에 해당되며 또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인신적지배 및 착취관계의 반동적성 격과 관련된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분화란 본래 하나이던것이 여러 갈래로 나뉘여지는것 또는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한다는 뜻으로서 계급신분구성에서의 분화라고 하면 계급신분구성이 초기에 비하여 후기에 와서 몇개의 등급으로 갈라지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론문에서는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고대계급신분의 구성과 분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하려고 한다.

# 2. 본 론

# 2. 1. 지배계급신분의 구성과 분화

#### 2. 1. 1. 고대초기 지배계급신분의 구성

고고학적자료를 통해 본 대귀족신분과 중, 소귀족신분

고대노예소유자사회에는 지배계급신분으로 귀족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첫 고대국가 고조선에서 특권신분은 대귀족과 중소귀족으로 구성되여있 었다.

고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고인돌무덤은 그 일단을 잘 보여준다.

현재 학계에서는 대형 또는 특대형고인돌무덤이 상층지배계급의 무덤으로서 그 크기는 노예주귀족관료들의 권력과 재부에 비례한다고 보고있다. 이 무덤들은 노예주계급에게 인신적으로 예속되여 지배와 착취를 당하던 노예와 평민들의 강제적집단로동의 창조물이였다.

대체로 고인돌무덤들은 그 뚜껑돌의 무게에 기초하여 세등급으로 나눌수 있다.

대급은 뚜껑돌이 70~100t으로, 중급은 40~70t으로, 소급은 10~40t으로 되여있다. 여기에 동원된 로력과 축조과정도 간단치 않았다. 초보적인 추산에 근거해도 대략 50t급의 무덤축조에는 2 000~2 300여공수가 들었는데 이것은 한공수가 매일 17~18시간 가동하는것으로 계산해도 매일 460명의 로력이 10일간, 230명의 로력이 20일간 만가동해야 할 로력이였다.\*

\*《고조선사회의 계급, 계층별구성》력사과학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5(2006)년 2호 26폐지

50t급의 무덤축조에 이만한 로력과 공수가 든다면 70~100t급에는 거의 두배의 로 력과 공수가 들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엄청난 로력과 공수가 투하된 고인돌무덤의 크기에 따라 노예주계급이 소유하였던 권력과 재부의 크기에서도 차이와 등급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실례로 고조선지역에 분포되여있는 고인돌무덤들가운데서 178개정도를 선정하여 대중소급으로 나누어보면 뚜껑돌의 길이가 5m이상의것이 16기, 3~5m정도의것이 44기, 1~3m정도의것이 118기로 되는데 이에 따라 노예주계급의 권력과 재부의 크기가 구분된다. 즉 제일 큰것은 전체 수의 9%, 중간정도의 크기를 가진것은 전체 수의 24.7%, 작은것은 66.3%이다.\*

\*《고조선사회의 계급, 계층별구성》력사과학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5(2006)년 2호 27폐지

이 사실은 특대형의 고인돌무덤의 주인공은 국왕과 왕실귀족들 그리고 대신급의 고 위관료들로, 중간크기급의 주인공들은 중간급노예주관료들로, 작은 크기급은 여러 하충노 예주관료들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인돌무덤의 등급크기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고인돌무덤의 주인공들은 해당한 등 급과 차이를 가지고 권력과 재부를 차지하였던 대, 중, 소노예소유자들이였다. 한편 작은 크기급이하의 고인돌무덤들은 사회적지위가 높은 평민들의 무덤으로 추정할수 있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4~5t정도의 고인돌무덤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 크기의 무덤주인공들은 부락우두머리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였거나 상층평민이였을수 있다.

고인돌무덤만이 아니라 고대집자리유적을 통해서도 권력과 재부를 독차지하였던 노 예소유자계급의 면모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고대집자리유적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유적에서도 면적이 넓은 집자리에서는 희귀하고 값진 유물들이 많이 드러나는 반면에 면적이 좁은 집자리들에서는 유물이 적게 나오거나 그 질적상태도 높지 못한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였다.\*1 그것은 석탄리유적 1기층의 집자리들가운데서 면적이  $38m^2$ 인 14호집자리와 면적이  $14\sim15m^2$ 정도인 6호 및 15호집자리에서 나온 유물들 그리고 남양리유적 1기층의 집자리들가운데서 면적이  $48m^2$ 정도인 19호집자리와 면적이  $14m^2$ 정도인 6호집자리에서 나온 유물들을 대비하여보면 알수 있다.\*2 그리고 면적이  $48m^2$ 인 신흥동유적의 2호집자리에서 나온 유물의 량과 가지수가 규모가 작은 다른 집자리들에 비하여 많은 사실도 그것을 증명해준다.

\* 1,2 《팽이그릇시기 집자리유적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출판사 주체92(2003)년 208페지

이상의 고고학자료들은 고대초기 지배계급신분이 크게 대귀족신분과 중, 소귀족신분으로 구성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문헌자료에 반영된 귀족신분이 구성

우리 나라 노예소유자사회에서 특권신분, 귀족신분은 《가》(加)였다. 부여와 구려에서 가는 대가(大加)와 소가(小加)로 구분되다.\*

\*《부여 및 후부여사》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1992년 84페지 《조선단대사》(구려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9(2010)년 81페지

원래 가는 전조선시기에 중앙관직명으로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 부여와 구려에 전승된것이였다.

《규원사화》에는 전조선시기의 중앙관직으로 단군8가(9가)가 나온다. 가는 전조선의 후국으로 있던 부여와 구려에도 있었다. 《삼국지》와 《후한서》에는 부여와 구려의 제가들 인 6가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였다.

중앙관직으로 출현한 단군8가가 단군조선에서 갈라져나온 부여, 구려에서 제가로 불리웠다. 제가(諸加)는 여러명의 가를 말하는데 이 가가 노예사회의 귀족신분이였다.

가를 노예사회의 귀족신분으로 보게 되는것은 우선 제가의 원래 의미가 확대되여 귀 족관료들의 집단을 나타내기때문이다.

고대국가들에서는 년차별로 제가평의회가 열리였다. 제가평의회는 여러명의 가들이 모여 진행하는 귀족민주주의적합의기구를 말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가들에는 중앙관직 의 8가(단군조선의 8가)나 6가(부여와 구려의 6가)만 참가한것이 아니라 지방의 여러 가 들도 참가하였다.

때문에 합의기구의 이름도 중앙관료인 8가나 6가만이 참가하는 대가회의가 아니라 많은 가들이 참가한다는 의미에서 제가평의회(諸加評議會)로 불리웠다고 본다.

가를 노예사회의 귀족신분으로 보게 되는것은 또한 부여의 제가들이 순장할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삼국지》(三國志)에 반영된 부여의 순장자료에는 제가들이 죽으면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은자는 수백명이나 순장한다. 장례를 후하게 하여 곽을 쓰고 관은 쓰지 않는다.》\*고 씌여있다.

#### \*《삼국지》권 30 위지 동이렬전 부여

부여의 순장과 관련한 이 자료에서 부여의 제가들이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은 자는 수백명》(多者百數)이라고 쓴 부분은 적은자도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묵자》(墨子)의 절장론(節葬論)에 《천자가 순장하는데 많은자는 수백명이고 적은자는 수십명》(天子殉葬多者百數, 少者十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과 부여의 순장자료를 대비해보면 부여의 제가들속에서 적게 순장하는자도 있었다는것을 시사하여준다. 그러므로 부여에서 제가가 죽은 후 《다자순장》(多者殉葬)한자는 대가급이고 《소자순장》(少者殉葬)한자는 소가급이였을것이다.

부여에서 대가급의 노예소유자는 100여명정도의 노예를 순장할수 있었고 소가급의 노예소유자는 수십명정도의 노예를 순장할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있었다.

이렇게 부여에서 순장할수 있는 권력을 지닌 가는 대가와 소가로 구분되여있었다.

가를 노예사회의 귀족신분으로 보게 되는것은 또한 《가》라는 이름이 중앙관직명으로 만 쓰인것이 아니라 고대이후시기 특정한 신분을 통칭하는것으로 불리웠기때문이다.

고추가를 문벌이 가장 높은 귀족신분층으로 본 고구려의 자료는 가를 관직명으로만 볼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고추가는 전신국인 구려의 제가였으며 이전 연나부왕족가문의 유력대신들이였다. 신흥한 고구려정권이 그들의 이전 지위를 고려하여 작위를 수여하였는데 그것은 실지 관직이 아니고 특권만을 가진 귀족칭호였다.(《조선단대사》(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6(2007)년 26~27폐지)

우의 사실은 가가 관직명이 아니라 귀족신분층을 가리키는 칭호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뿐아니라 전조선이래로 중남부조선지역으로 전파된 관직명 《가》는 그 이후 한, 한 기, 거슬한(거서한, 것한), 가한, 극한으로 되여 귀한 사람, 큰어른 등을 의미하는 말로 되 였다.\* 이것도 역시 가라는 의미가 관직명이 아니라 특권을 가진 귀족관료층을 일반적으 로 가리키는 말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9(2010)년 92~93폐지

이와 같이 가는 권력의 정도에 따라 노예를 순장할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등급에 따라 의상도 각이하게 착용할수 있는 지배계급신분이였다.

지배계급신분인 가에는 단군조선의 중앙관료인 단군8가가 속하였고 그 이후 부여에서 중앙의 6가를 비롯한 여러 대가들과 대사, 대사자, 사자 등과 같은 소가들이 속하였다.

고대귀족신분 가를 좀더 넓게 보면 대가에는 중앙의 8가나 6가뿐아니라 변방의 후 왕과 속령의 우두머리들이 속하였고 소가에는 중앙의 가들밑에 있었던 중소관료들과 후 왕과 속령우두머리에게 소속되여있는 중소관료들, 일부 공동체상층들이 속하였을것이다.

이러한 귀족신분 가가 신분으로 고착된 시기는 대체로 단군조선성립이후라고 보아진다. 그것은 단군조선초기 중앙관직명으로 출현한 가가 대가와 소가로 구분된 귀족신분으로 되기에는 어느 정도 과도기가 필요하였기때문이다.

제반 사실은 고대초기 귀족신분은 크게 대가귀족신분과 소가귀족신분으로 구성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 2. 1. 2. 고대말기 지배계급신분에서 여러 등급으로 분화

고대초기 대귀족신분과 중, 소귀족신분으로 구성되였던 지배계급신분은 점차 고대 말기에 이르러 여러 신분등급으로 분화되였다. 그것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조선일대 에서 나타난 귀틀무덤을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여러 귀틀무덤들을 조사하여 분류해보면 여기에 묻힌자들의 신분규정은 매우 엄격하였다. 귀틀무덤의 크기와 형식, 유물의 가지수와 량을 따져보면 무덤에 묻힌자들을 9개의 신분등급으로 구분해볼수 있다.\*1

이 유적을 남긴 정치세력은 고조선이 멸망한 후 그 유민들에 의하여 세워진 락랑국이나 《조선후국》의 통치집단이였다.\*2

\* 1,2《귀틀무덤을 남긴 정치세력들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5년 1호 11~15폐지

물론 이 무덤들이 노예제말기 혹은 봉건사회초기에 해당되는 무덤이지만 고조선유민들이 세운 락랑국이나 《조선후국》의 통치집단이 남긴 무덤인것만큼 무덤에 반영된 귀족들의 신분등급은 그 이전 고조선말기의 귀족신분등급을 이어받은것이다.

		유 물 구 성	
신분등급	무덤의 크기	마구 및 수레부속	무기무장
		금과 옥으로 된 마구 및 수레	순금제띠고리,
첫번째	76자이상	부속 2조이상	옥도장, 무기무장 2조
두번째	68자	마구 및 수레부속 2조	무기무장 2조
세번째	64자	마구 및 수레부속 1~2조	무기무장 1~2조
네번째	60자	마구 및 수레부속 1조	무기무장 1조
다섯번째	56자	마구 1조	무기무장 1조
여섯번째	52자	마구의 하나인 말자갈 1조	긴쇠칼 1개
일곱번째	48자	없음	긴쇠칼 1개
여덟번째	46자	없음	없음
아홉번째	44자	었은	없은

귀틀무덤에 반영된 9개의 신분등급표

표에서는 지배계급신분의 대표적인 표정을 나타내는 마구와 수레부속, 무기무장만 인용하였 고 칠반이나 놋그릇, 치레거리와 같은 기타 껴묻거리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표에 반영된 9개의 신분 및 관료등급은 선행한 고조선말기 귀족신분의 양상을 적으나마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꼭 고조선말기에 9개의 신분등급으로 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귀틀무덤의 시기는 어디까지나 노예제말기부터 봉건사회초기까지로 규정되는것만큼 노예사회말기로 한정시켜본다고 하여도 9개의 신분등급이하로 되여야 한다. 따라서 고대귀족신분은 노예사회말기에 이르려 9개이하정도의 신분등급 또는 폭넓게 여러 신분등급으로 분화되었다.

앞에서 고인돌무덤자료를 통하여 고조선시기 노예주계급은 대귀족, 중, 소귀족신분으 로 구성되였다는것을 보았다. 이것은 력사자료와 결부하여볼 때 초기노예주계급의 신분 등급이 70~100t급노예주는 대가급귀족신분층으로, 40~70t급과 10~40t급사이의 중, 소 노예주는 소가급귀족신분층으로 구성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노예사회말기에 이르러 귀틀무덤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분 및 관료등급이 9개이 하 등급 혹은 여러 등급으로 분화되였다.

앞선시기와 후시기 귀족신분의 무덤자료들은 지배계급신분의 등급이 엄격하였다는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사회발전과 더불어 귀족신분의 분화가 진행되였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

이렇게 노예사회초기 대가급과 소가급으로 구성된 귀족신분은 오랜 세월이 흐른 노 예사회말기에 이르러 여러 등급으로 분화되였다.

## 2. 2. 피지배계급신분의 구성과 분화

#### 2. 2. 1. 고대초기 피지배계급신분의 구성

고대에 피지배계급신분은 크게 평민과 노예로 구성되였다.

평민은 노예사회에서 일정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자체로 경리를 운영해나가는 계층으 로서 국가의 기본수탈대상이였다.

평민은 전조선(단군조선)시기부터 있었다. 《규원사화》에 나오는 《세민》, 《소민》, 《서 민》등은 우리 나라에서 평민이 전조선시기부터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9(2010)년 136폐지

《삼국지》와《후한서》도 피착취계급, 피지배계급인《민》(民)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문 헌에 나오는 《민》은 곧 고대평민을 가리킨다. 이러한 평민들은 직업적으로 자영소농민이 기본이고 그외에 수공업자 등도 있었다.

노예는 최하층신분으로서 원시사회말기 계급의 발생과 함께 출현하였다.

노예사회에서 노예는 인간의 모든 권리를 노예주에게 빼앗기고 철저히 예속된 소유 물이였으며 말하는 도구였다. 노예는 죽어도 무덤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주가 죽으 면 노예주를 따라 산채로 무덤에 순장되였다.

평민신분과 노예신분은 고대 첫 시기부터 피지배계급신분이였다.

### 2. 2. 2. 고대후기 피지배계급신분이 분화

피지배계급신분인 평민과 노예는 노예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그 구성에서 여러 계 급신분층으로 분화되였다.

#### 평민신분층의 분화

《삼국지》에 실린 자료는 평민신분층에서 분화가 일어났다는것을 보여준다.

《읍락에는 호민과 민이 있고 하호는 모두 〈노복〉이 된다.》(邑落 有豪民 民(名) 下戶 皆爲奴僕》)\*

#### \*《삼국지》권30 위지 동이렬전 부여

이 자료를 통하여 부여의 평민신분이 호민과 일반적인 민, 하호로 분화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먼저 고대후기에 평민신분층에서 호민(豪民)이 분화되였다.

호민은 평민의 상층으로서 문자그대로 《부유한 백성》이였다.

호민의 신분적성격에 대하여 《한서》 식화지에는 호민이 자기의 땅을 하호에게 빌려주어 10분의 5세를 받아먹는다고 하였다. 《한서》의 자료는 봉건사회초기 중국의 호민을 념두해두고 그 성격을 규정하였지만 우리 나라의 호민과 그 성격에서 다를바 없었다.

《삼국지》와 《후한서》에 의하면 고대부여에 호민이 있었다.

고대부여의 호민이 언제부터 있었겠는가. 《규원사화》에는 《민》이나 《세민》 등은 나타나지만 《호민》이란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여이전의 단군조선시기에는 호민이 없었을것이다.

이렇게 호민에 대하여 전하는 자료는 없지만 평민신분층가운데서 비교적 경제생활이 넉넉하였던 일부 자영소농민들로부터 호민이 생겨났다.\*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9(2010)년 147폐지

자영소농민들가운데 일부 부유한자들이 노예주지배계급에게 붙어 토지를 넓히면서 소농민적토지소유관계를 확대해나갔다. 그 과정에 원래 평민이였던 부유한자들은 호민으로 되였으며 그들은 착취자로 등장하였다. 호민들이 읍락에 틀고앉아 하호들을 노복처럼 부려먹었다고 전하는 자료는 그것을 증명해준다.

호민의 출현시기는 노예사회후기였다고 본다.

이렇게 평민신분층에서 분화된 호민들은 공동체경리와 자영소경리의 파산으로 몰락된 일부 하호들을 자기 땅에 얽매여놓고 착취한 결과 착취자로 되였다. 호민들은 점차비대해져 노예제말기 — 봉건사회초기에는 대부호로 자라나 해당 지방의 유력자로 등장하게 되였다.

호민에는 비교적 많은 토지를 가진 부유한자가 기본이였다. 지어는 몇명의 노예도 소유하고있었다.

하지만 호민은 어디까지나 노예사회가 발전하면서 평민신분의 분화과정에 출현한 새로운 착취자일뿐 당시 많은 비중을 차지한것은 아니였다고 본다.

다음으로 고대후기에 평민신분층에서 하호(下戶)가 분화되였다.

하호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각이한 견해가 있다.

그러한 견해를 보면

첫째로, 하호는 곧 노예라는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공납노예가 기본이였다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둘째로, 하호는 희정복민과 씨족공동체원이라는것이다.

셋째로, 하호는 노예적예속상태에 있는 예농층이라는것이다.

넷째로, 하호는 《민》에 속하는 사회의 기본생산자이며 절대다수가 농촌공동체원이라 는것이다.

다섯째로, 하호는 농노라는것이다.

여섯째로, 하호는 하층빈민일반으로서 공동체가 분해되면서 생겨난 어제날의 공동체 농민이였다는것이다.

일곱째로, 하호는 신분적으로는 《민》(民)으로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노예로서 착취당한 빈민들이라는것이다.

이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하호는 공납을 바치는 노예나 정복당한 공동체농민 혹은 봉건사회의 농노로 보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하호는 《빈민》(貧民)을 의미하였다.

하호는 당시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나라들인 고대중국과 왜나라에도 있었다.

전국시기 제나라의 수도 림치에 있었던 7만호의 하호들은 매호당 남자 3명을 계산하여 21만명의 군대를 낼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하호는 일반빈민을 가리키는 범칭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하호는 왜나라에도 있었는데 《삼국지》 왜전에는 《그 풍속에 대인은 모두 4~5명의처를 데리고 살고 하호도 간혹 2~3명의 부녀를 거느리고있다.》\*고 하였다. 이것과 같은 내용을 전한 《후한서》의 기록에는 왜에 너자가 많아서 대인들은 4~5명의 처를 두었고 그 나머지사람들은 2~3명의 처를 두었다고 한다. 이 두 기록을 따져보면 하호가 어떠한 계층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대인》과 대칭되는 일반백성을 부른 말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 \*《삼국지》권30 위지 동이렬전 왜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하호가 어떤 빈민충이였는지 하호에 대하여 서술한 《삼국지》 와 《후한서》의 대표적인 자료들을 놓고 분석하기로 한다.

《읍락에는 호민과 민이 있고 하호는 모두 〈노복〉이 된다.》

《적이 있으면 제가가 스스로 일어나 싸우고 하호는 식량을 날라다 그들을 먹인다.》

《큰 군장이 없고 한대이래로 후, 읍군, 삼로 등의 관리들이 있어 하호를 지배한다.》

《하호들이 한나라의 군에 조알하러 갈 때 모두 옷과 복두를 빌려입고 쓰고가는데 자기의 도장을 가지고 자기 옷과 복두를 쓰고가는자가 천여명이다.》

《혹 호민(豪民)의 밭을 갈아 10분의 5세를 문다. 사고가 말하기를 《하호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것이다. 자기의 땅이 없어서 호부(豪富)집땅을 경작하여 10분의 5세를 본 주인에게 가져다준다.〉》

하호에 대한 이 기록들을 보면 크게 두가지 내용을 알수 있는데 하나는 하호가 노예와 구별되는 계층이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호가 국가 혹은 개별적인 지주에게 부세를 무는 농민이였다는것이다. 즉 하호는 평민의 최하층으로서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소작농이였다고 보게 된다.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소작농인 하호가 부여와 같은 고대국가들에서도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봉건사회의 소작농인 하호가 출현하게 된 경위가 봉건사회이전 노예사회말기와 관련되여있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고대하호에 대한 신분적규정은 여기에 주목을 돌리고 노예사회에서 하호가 출현하게 된 경위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소작농은 생산수단에 대한 완전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로부터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불완전한 토지소유자이다. 토지를 빌린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수확량의 일부를 바치면서 살아가는데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서 볼 때 아무러한 생산수단도 소유하지 못한 피착취자였다.

하호의 출현과 관련된 자료는 구체적으로 알려진것이 없지만 발생의 견지에서 본다면 하호는 노예사회가 발전하면서 공동체경리의 침식과 노예제경리의 확대로 파산몰락된 공동체농민들에게서 산생되였다.

원래 원시사회에서 공동체경리는 공동체적토지소유에 기초하여 토지를 분여받아 경작하였으며 붕괴후 국가성립이후에는 국가와 공동체상층에 일정한 수확물을 바치는 형태로 진행되였다. 그러나 노예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노예주들의 끊임없는 탐욕과 노예제경 리의 확대로 말미암아 공동체경리는 점차 침식되여갔으며 공동체자체가 해체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렇게 되여 공동체토지도 점차 국가 또는 개별적인 대노예주들의 수중에 장악되였으며 공동체성원들은 생산수단이 없는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이런 상태에서 몰락된 대부분의 공동체원들은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땅을 부칠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들에게 인신적으로 예속까지 되면서 토지를 빌려 개인경리를 운영해갈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평민에서 하호가 산생되게 된 기본요인이였다. 다시말하여 사회의 피압박근로인민들을 예속화하려는 노예주계급의 끊임없는 탐욕과 그로 인한 노예제경리의 확대로 말미암아 노예사회후기에 평민에서 하호로 부단한 계급분화가 일어났다.

한편 평민에서 분화된 하호는 노예소유자적경리에 얽매인 새로운 농민 즉 소작농으로 전환되였다. 하호를 《어제날의 공동체농민》이였다고 보았던 선행견해는 이와 같은 점을 중요시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경제관계는 노예사회말기의 태내에서 자라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싹이라고 볼수 있고 이것이 장차 봉건적생산관계로 이어졌을것으로 보인다.

그뿐아니라 하호는 자영소농민들도 파산몰락되여 적지 않은 구성을 이루었다.

자영소농민들은 원래 원시사회붕괴후 공동체해체로 산생된 자유로운 농민들로서 처음에는 얼마만한 토지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자영소농민들은 거듭되는 국가적인 부역과 병역, 가혹한 조세착취와 끊임없는 전쟁 등으로 령락되고 종당에는 파산몰락되여 생산수단을 잃게 되였으며 점차 노예 또는 하호로 굴러떨어졌다.

그것은 우선 하호의 대부분이 노예와 같은 예속적인 처지에서 국가와 노예주들에게 가혹한 착취를 당하여 사회의 빈민층으로 굴리떨어진데서 찾아볼수 있다. 당시 하호의 처지가 얼마나 가난하였으면 남의 옷을 빌려입고 나들이를 갔다고 한다.<sup>\*1</sup> 일부는 그래도 자기 도장과 옷을 구비할 정도로 비교적 부유해지는 경우<sup>\*2</sup>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하호들은 모두 가난한 백성들이였다.

#### \* 1,2 《삼국지》 권30 위지 동이렬전 한

그것은 또한 하호의 일부가 노예사회말기에 새로 자라난 호민과 같은 중간층에게 착취를 당한 자료에서 찾아볼수 있다. 봉건사회초기 하호가 호민에게 10분의 5세를 바쳤다는 자료는 그 이전 노예사회말기에도 그러한 착취관계가 있을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호는 공동체농민이나 자영소농민, 수공업자 등 평민들이 파산몰락되여 구성된 평민의 하층이며 그들은 생산수단이 없는것으로 하여 착취계급에게 예속되여 착취를 당하였다. 하호는 노예사회말기 계급분화과정에 많이 생겨났으며 점차 그 수가 증대되였다.

#### 노예신분층의 분화

노예사회 첫 시기에 출현한 노예신분은 점차 노비로 불리웠고 소유관계에 따라, 노예로 된 경위에 따라, 종사하는 직분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였다.

우선 노예신분은 노예사회후기에 이르러 노비로 불리웠다. 범금8조에는 《도적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 그 집의 노로, 녀자인 경우 그 집의 비로 만든다.》는 조항이 있다. 범금8조는 후조선시기의 발전된 성문법인데 이와 같은 조항이 명기된것은 후조선시기에 들어와서 노예신분을 명백히 노비로 불리웠다는것을 보여준다.

《삼국지》를 비롯한 문헌들에도 우리 나라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서 최하층신분이였던 노비(奴婢)가 기록되여있다.

《삼국지》와 《후한서》에서 정식 노비라고 표현한 자료는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살 인한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만든다.)와 《其遠處直如囚徒奴婢》(그와 멀리 있는 곳은 죄수와 노비와 같다.)를 비롯하여 여러곳에 있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하여 노예사회에 처음부터 출현한 노예신분이 후조선시기이후 노비신분으로 불리웠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노예사회후기에 이르러 노비의 소속관계가 공노비, 사노비로 명백히 구분되였다. 범금8조에서 도적질한자를 도적맞은자의 노비로 삼도록 하였다는것은 사노비의 존재를 보여준다. 노비의 소속관계에서 사노비가 존재하였다면 명백히 공노비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고대후기에 이르러 노예신분이 노비로 불리웠으며 소속관계에서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였다는것을 증시해준다.

# 2. 3. 고대계급신분의 구성과 분화의 특징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 노예사회에서 계급신분은 국가의 성립과 함께 형성되고 노예제도가 발전한 이후 그 구성이 더욱 세분화되였다.

고대계급신분의 구성과 분화는 일련의 특징을 띤다.

그것은 첫째로, 고대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신분의 구성과 분화가 고조선을 중심으로 진행된것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조선일대의 고인돌무덤과 집자리, 귀틀무덤의 자료들은 고대 지배계급신분의 구성과 분화가 고조선에서부터 시작되였다는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대계급신분의 구성과 분화과정이 고조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였다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하여 단군조선시기 처음으로 출현한 노예주귀족신분인 가는 후국으로 있던 부여, 구려, 진국에까지 전파되여 당시의 국가와 사회에서 특권귀족신분으로 존재하여왔다.

둘째로, 계급신분의 분화는 고대초기에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후기에 이르러 적지 않게 진행된것이다.

평민신분층에서 호민, 민, 하호로 분화되였다고 전한 부여의 자료는 노예사회말기의 형편을 반영한것으로 본다. 그뿐아니라 노비에 대하여 명기한 범금8조도 고조선초기의 법이 아니라 후조선시기의 발전된 성문법이였다.

고대계급신분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현존하는 자료를 보아도 초기에 구성된 계급신 분이 변화가 없다가 노예사회후기에 와서 자료들이 나타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셋째로, 평민층에서 하호가 많이 생겨나는 방향으로 피지배계급신분구성의 분화가 진행된것이다.

하호에 대하여 전하는 《삼국지》에 씌여진 자료를 보면 지배계급, 착취계급이 의거하는 생산자대중에 노예 못지 않게 하호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었다고 볼수 있다. 더우기 자료에서 전한것처럼 하호가 종사하는 업종도 전업적인 농사일외에 소금구이, 물고기잡이 등 다양하였다.

지배계급, 착취계급이 하호를 노복처럼 부려먹었던 리유는 바로 하호가 농업을 비롯하여 생업을 담당한 자영소농민, 수공업자 등이 파산몰락되여 이루어진 최하층이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전반에서 하호의 비중은 국가의 기본수탈대상인 평민을 부단히 분화시 켜 그를 예속화하고 착취하려는 노예주계급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불어나게 되 였다.

# 3. 결 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나라 노예사회에서 지배계급신분은 처음에 특권신분인 귀족이 대가와 소가로 구분된 가로 구성되였으며 그 말기에는 여러개의 신분 및 관료등 급으로 분화되였다.

피지배계급신분은 초기 평민과 노예로 구성되였던것이 노예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말 기에 이르러 평민신분층에서 호민, 민, 하호로 그리고 사회의 최하층신분인 노예(노비)신 분에서 소속관계에 따라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분화되였다.

계급신분의 구성과 분화는 곧 노예사회말기에 이르러 계급신분관계의 째여진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나라 고대사회의 노예제적성격이 강화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 중세 계급신분제도의 력사가 고대계급신분의 분화로부터 시작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고대계급신분제도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신분제도의 력사를 깊이 해명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하호, 제가, 노예소유자